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 m²(재활용품)]

보 호 의 무 자 동 의 확 인 란

1. 보호의무자의 수: ☐ 1명, ☐ 2명 (해당 사항에 √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)
 - ※ 「정신보건법」에 따른 보호의무자: 「민법」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
 - ※ 「민법」상 부양의무자: 배우자,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(며느리, 사위 등),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
2.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필요하나,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고령, 질병, 군복무, 수형,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소동의서를 입소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의무자가 그 사유서를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소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※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가 제출한 부득이한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적어야 합니다.
 - ※ 해당 보호의무자가 관련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.